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15호 2022. 3. 14.(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02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603호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4
남해군 조례 제2604호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7
남해군 조례 제2605호	남해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
남해군 조례 제2606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남해군 조례 제2607호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남해군 조례 제2608호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
남해군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19
남해군 조례 제2610호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23
남해군 조례 제2611호	남해군 여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남해군 조례 제2612호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32
남해군 조례 제2613호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39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3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43
남해군 고시 제2022-32호	우물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46
남해군 고시 제2022-33호	대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48
남해군 고시 제2022-34호	상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50
남해군 고시 제2022-35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52
남해군 고시 제2022-37호	군도7호선(두모-소량)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54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340호	공시송달(2차 보상협의) 공고	58
남해군 공고 제2022-345호	공시송달 공고	60
남해군 공고 제2022-34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61
남해군 공고 제2022-37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62
남해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3호	남해군 대체인력뱅크(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63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02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

제1조(「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4명으로 한다” 를 “3명 이상 10명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를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로 한다.

제2조(「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를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 으로 한다.

제3조(「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 을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를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로, “법 제117조 및 제120조” 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04조제2항” 을 “법 제117조제2항”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9조” 를 “법 제13조” 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41조제5항” 을 “법 제49조제5항” 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법 제41조제3항” 을 “법 제49조제4항” 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88조” 를 “법 제100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03호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군의회” 를 “남해군의회” 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의회
2. 남해군의회 인사위원회

제2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남해군의회회장의 승인을 받아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 중 “남해군의회” 를 “남해군의회, 남해군의회 인사위원회” 로 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해군의회 인사위원회 인 : 3.6센티미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 인 의 규 격

1. 남해군의회 의원 인 : 3.6센티미터
2. 남해군의회 의장의 직인 : 자치단체장 직인 규격과 동일
3. 남해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직인 : 의장직인 규격
<개정 1992.3.7., 2007.5.31>
4. 남해군의회 인사위원회 인 : 3.6센티미터

남해군 조례 제2604호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남해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05호

남해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7.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홍보사업
5. 치유농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
-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06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어린이집 입소자 지원대상: 군 소재 어린이집에 입소한 6세 미만 영유아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와 입소자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별표 3 중 어린이집 신입생 지원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집 입소자 지 원	어린이집 입 소 자 지 원	조례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인당: 연도별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중 입소 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1회)	주 복 지 민 과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07호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 당선인(「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08호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우회”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군의 발전 등을 위해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군과 향우회 간의 상호 친선우호 및 군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사업) 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축제 등 주요행사
2. 향우회원 및 자녀들의 고향 문화유적 탐방
3. 향우회 활동의 홍보
4. 향우회가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대한 협의 및 협조
5. 교류·협력 및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6.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7.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류활성화 지원) 군수는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군수는 군과 향우회 간의 교류 활성화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향우회 및 그 회원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2조(「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3조(「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으로,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5조(「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6조(「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7조(「남해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 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로 한다.

제9조(「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13조” 를 “「지방자치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26조” 로 한다.

제10조(「남해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 를 “「지방자치법」 제9조” 로 한다.

제11조(「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를 “「지방자치법」 제7조” 로 한다.

제12조(「남해군 반 설치 조례」의 개정)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으로 한다.

제13조(「남해군 이장정수 조례」의 개정)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으로 한다.

제14조(「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의 개정) 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로 한다.

제15조(「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 를 “(「지방자치법」 제124조)” 로 한다.

제16조(「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 를 “「지방자치법」 제141조” 로 한다.

제17조(「남해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남해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 을 “「지방자치법」 제141조” 로 한다.

제18조(「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19조(「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해군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20조(「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의 개정)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로 한다.

제21조(「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 를 “「지방자치법」 제161조” 로 한다.

제22조(「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23조(「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10호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아이 및 보호자가 남해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 연령은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제5조 관련)

구 분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지원율(균비)	비고
첫째·둘째아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	50%	
	나		50%	
	다		50%	
	라		50%	
셋째아 이상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	-	100%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별지서식]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 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남/여)			시간제/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남/여)			시간제/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남/여)			시간제/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연 락 처	자 택			휴 대 전 화	
입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 육 공 백 유 형	취업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 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해군 조례 제2611호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군립어린이집”이란 군”을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보육업무담당주사가”를 “보육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군립어린이집”을 각각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명칭과 위치)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조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조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군립어린이집” 을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을 “국가 평가인증시설, 평가우수시설 또는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22. 3. 14.>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제9조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비고
1	국공립 남해하나어린이집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1번길 30-6	
2	국공립 보물섬어린이집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20, 102동 1층(남해평리휴먼시아)	
3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09 번길 21	

남해군 조례 제2612호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남해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남해군의 체육 진흥과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6. “학교체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0.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체육 진흥 지원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 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6.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노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4. 노인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5.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2. 학교체육활동 우수 선수와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지급 및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직장체육의 진흥) 군수는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장체육 육성 및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직장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스포츠클럽의 진흥)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체육진흥 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① 군수는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경비(교통비, 숙박비, 시설사용료) 지원
2. 훈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보수
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4. 전지훈련 활성화를 위한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5. 그 밖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경비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체육회 등의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체육회 및 남해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시설 임차료
3. 공과금 등 관서운영 기본경비

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남해군체육회 및 남해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남해군 체육진흥협의회

제14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남해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남해군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남해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체육진흥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인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체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제24조(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시책) 군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남해군 조례 제2613호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문화 및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해상안전보안관”이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상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상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해상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해상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 4. 해상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 5. 현지 바다지형에 밝은 군민으로서 해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 6. 해군 전역자 및 해양경찰 퇴직자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 7. 그 밖에 군수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해상안전보안관의 활동) 해상안전보안관은 군의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낚시객 및 낚시어선 등 안전계도
- 2. 해안 안전시설물 점검 및 순찰
- 3.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 보호 관련 활동
- 4. 해상 안전 관련 위반 행위 신고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등”이라 한다)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등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등에 각각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소속 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등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등의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등 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4. 위촉 당시 소속된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11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등 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3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4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390-10 외 27건

연번	종 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비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55-860-3642~364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지정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업무구분	중진주소	도로명주소	효과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광진리 347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390-10	20220224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604-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로 100	20220222	두곡(전동, 전동, 쇠물, 불리면 곡)과 양지(산을 등지고 앉은 마을의 좌가 정남)를 연결하는 도로임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1490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541-38	20220221	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30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천로96번길 14	20220218	화천로96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화천로96번길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정리 27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고실로 377-43	20220218	임금이 놀러온 고개라는 고개라는 고실고개가 있던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원리 24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223	20220217	진지훈린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포츠파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대벽리 918-1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1230번길 6	2022021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3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장리 107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431번길 32	20220217	남해대로2431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진리 산169-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52번길 36-20	20220215	양화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지족리 846-4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295-26	20220215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115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729	20220214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500-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37번길 32	20220214	초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3-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128-61	20220214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1427, 1428, 1428-1, 1497-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797-14	20220214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편이라 불렀다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1428-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797-6	20220214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편이라 불렀다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142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797-10	20220214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편이라 불렀다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917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838-24	20220211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신리 2188-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신로 69-40	20220211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9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4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208-28	20220211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지족리 438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68-33	20220211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대벽리 452-17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441-26	20220210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946-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진로 606	20220211	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185-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신소로16번길 99	20220209	신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238번길 16-118	20220209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가인리 신149-17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흥신로 447-37	20220207	고려 충신왕때 개칭한 장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57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 121-20	20220207	남해읍 소재지의 중심도로로서 아름다운 남해를 나타내는 옛 지명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긴리 380-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7	20220204	독일에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 거주교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독일마을이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판리 718-2, 신11-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205번길 12	20220203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22-32호

우물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의거 우물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0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우물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위생 및 안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비 : 1,965,000천원(국비 1,480,000, 지방비 485,000), 자부담 별도(47,939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생활·위생 인프라 : 마을안길 정비(574㎡), 안전펜스 설치 1식, 마을안전시설 정비 및 조성(CCTV 등 1식), 하수시설 조성(1,140m), 재래식화장실 정비(2호)
- 주택정비 지원 : 빈집정비(26호), 슬레이트지붕개량(12호), 집수리(4호)
- 마을환경 개선 : 마을주차장 조성(319㎡), 마을공원조성(277㎡), 마을회관정비(1식)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마을리더교육, 주민교육, 백서제작, 건강프로그램 등

※ 분야별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사업량	사 업 비 / ()외서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1,965,000	1,480,000	485,000	(47,939)
생활·위생 안전인프라	소 계		1,128,990	881,876	247,114	-
	■ 마을안길정비	574㎡	104,465	83,572	20,893	-
	■ 안전헬스설치	1식	45,877	36,702	9,175	-
	■ 마을안전시설정비 및 조성	CCTV등	78,069	62,455	15,614	-
	■ 하수시설조성	1,140m	889,576	690,345	199,231	-
	■ 재래식화장실정비	2호	11,003	8,802	2,201	-
주택정비	소 계		302,066	211,445	90,621	(47,939)
	■ 빈집정비	26호	174,942	122,459	52,483	(5,977)
	■ 슬레이트지붕개량	12호	107,758	75,430	32,328	(32,368)
	■ 집수리	4호	19,366	13,556	5,810	(9,594)
마을환경 개선	소 계		217,203	164,962	52,241	-
	■ 주차장 조성	319㎡	99,474	79,579	19,895	-
	■ 마을공원 조성	277㎡	109,079	78,463	30,616	-
	■ 마을담장 정비	1식	0	0	0	-
	■ 마을회관 정비	1식	8,650	6,920	1,730	-
휴먼케어	소 계		30,000	21,000	9,000	-
	■ 요가 교실	1식	7,000	4,900	2,100	-
	■ 치매예방 교실	1식	8,000	5,600	2,400	-
	■ 노래 교실	1식	8,000	5,600	2,400	-
	■ 백서제작	1식	7,000	4,900	2,100	-
주민 역량강화	소 계		14,000	9,800	4,200	-
	■ 리더교육	1식	6,000	4,200	1,800	-
	■ 주민교육	1식	4,000	2,800	1,200	-
	■ 마을발전워크숍	1식	4,000	2,800	1,200	-
제경비	소 계		272,741	190,917	81,824	-
	■ 기본 및 마스터플랜수립	1식	48,569	33,998	14,571	-
	■ 세부설계비	1식	53,761	37,632	16,129	-
	■ 공사감리비	1식	121,856	85,299	36,557	-
	■ 사업관리비	1식	25,699	17,989	7,710	-
	■ 잡지출	1식	22,856	15,999	6,857	-

5.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6.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7. 기타(시행계획 열람 장소)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055-860-3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2-33호

대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8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대량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 가. 위 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 305-5번지 일원
- 나. 사업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L=1,330m
- 다. 사업비 : 금3,458,000,000원(금삼십사억오천팔백만원)
- 라. 사업기간 : 2021년 6월 ~ 2023년 6월
- 마. 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

2. 설계도서 열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3. 다른 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4.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5.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비 고
사업내용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정비사업	
사업비(천원)	3,458,000	800,000	1,000,000	1,658,000	

6. 유지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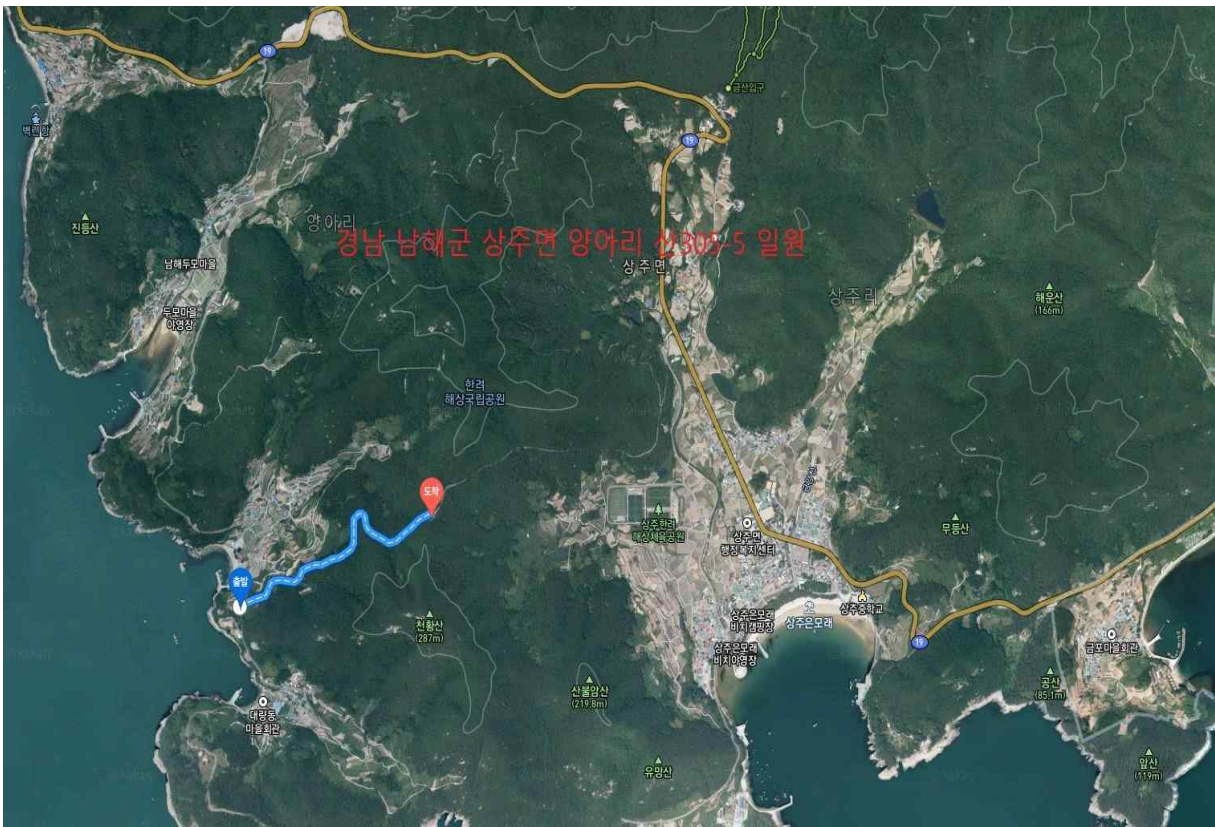
가. 정비공사 완료 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을 조정하고 (필요시)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해제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로 안전 및 유지관리 만전을 기함.

8.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명세 : 엑셀참조

9. 기타사항 :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55-860-32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위치도



남해군 고시 제2022-34호

상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8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상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 가. 위 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 325번지 일원
- 나. 사업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L=1,650m
- 다. 사업비 : 금4,578,000,000원(금사십오억칠천팔백만원)
- 라. 사업기간 : 2021년 7월 ~ 2023년 7월
- 마. 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

2. 설계도서 열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3. 다른 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4.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5.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비 고
사업내용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정비사업	
사업비(천원)	4,578,000	700,000	1,000,000	2,878,000	

6. 유지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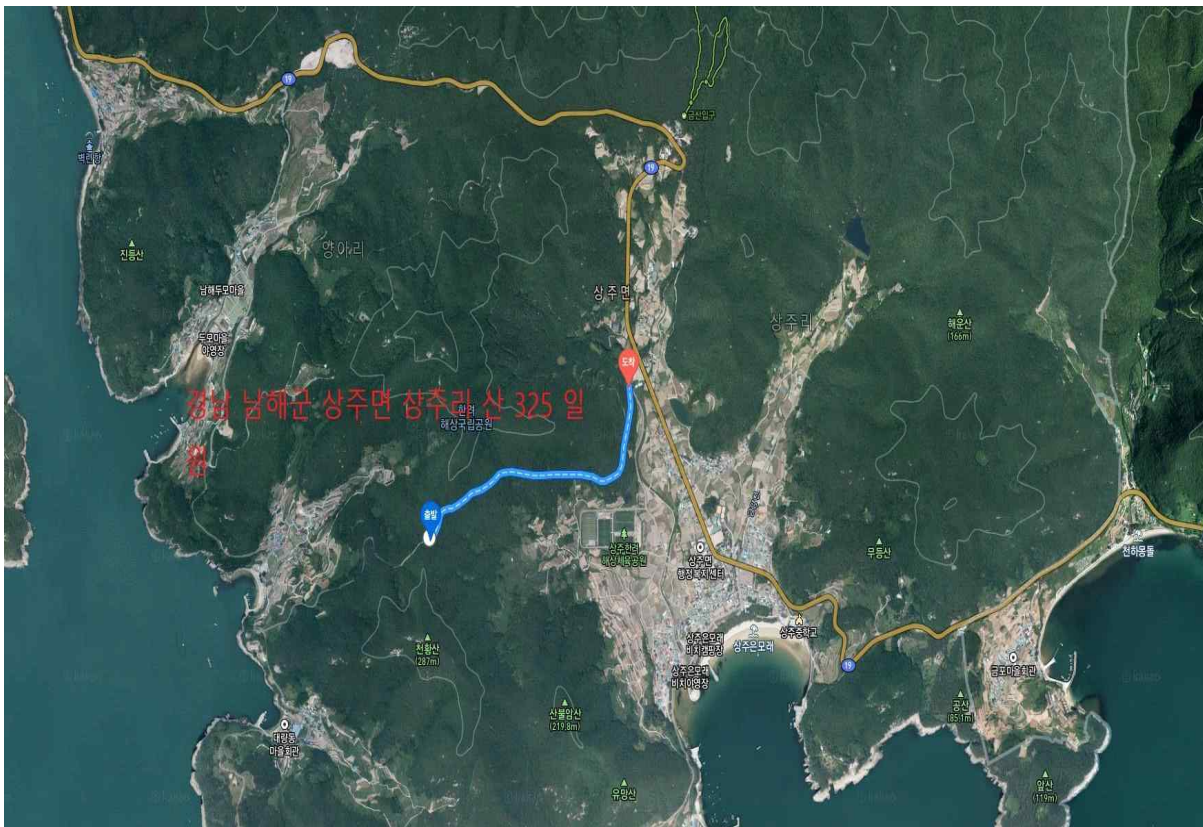
가. 정비공사 완료 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을 조정하고 (필요시)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해제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로 안전 및 유지관리 만전을 기함.

8.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명세 : 엑셀참조

9. 기타사항 :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55-860-32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위치도



남해군 고시 제2022-35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규정 제3조·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 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2022년 3월 8일

남 해 군 수

① 목적 :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② 지역 : 남해군 전 지역

③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 남해군 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 사슴은 농가 자율 접종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④ 실시기간 :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⑤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방법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된 접종 방법으로 접종 실시('20.1월 기준 허가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 : 근육접종)

나.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관할지역 내 가축 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다음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항체양성률 기준치(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

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조치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제5의2호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3.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공문) 및 기준치 미만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확인 시까지 반복 검사 실시

라. 주의사항 : 모든 개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은 위 “나” 의 항체양성률 기준치 유지

마. 문의사항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860~3973)

남해군 고시 제2022-37호

군도7호선(두모-소량)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69-2번지 일원에 위치한 소량지구 군도7호선(두모~소량) 정비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0일

남 해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m ²)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km)
기정	군도	7	두모~소량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	1,695	상주면 양아리 630-2	상주면 양아리 산268-2	-	0.728
변경	군도	7	두모~소량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	13,365	상주면 양아리 630-2	상주면 양아리 산268-2	-	0.728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22. 1 ~ 2022.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1 참고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실음생략 (남해군 건설교통과 비치)

남해군관리계획(도로: 소로2-67호선) 결정(변경) 조서

□ 남해군관리계획(도로: 소로2-67호선)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7	8	보조 간선 도로	6,274	상주면 상주리 2207	상주면 양아리 산39-2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9-10호 (2009.02.02.)	군도 7호선
변경	소로	2	67	8	보조 간선 도로	6,274	상주면 상주리 2207	상주면 양아리 산39-2	일반 도로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2-67호선	소로2-67호선	○ 구역변경	○ 상주면 양아리에 위치한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이를 반영하여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하고자 함

남해군계획시설(도로: 소로2-67호선) 실시계획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6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해군계획시설사업(소로2-67호선) 정비공사
- 명 칭 :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면정비 L = 728m, B = 8m, A = 13,365㎡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 명 : 남해군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 예정일 : 2022년 1월
- 사업의 준공 예정일 : 202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1 참고

7. 관계도서 : 실음생략(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

**별첨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계				13,736	13,365			
1	상주면 양아리	1255-1	도	51	51	남해군		
2	"	1256-1	전	796	796	남해군		
3	"	1257-1	전	568	568	남해군		
4	"	1261-1	전	127	127	남해군		
5	"	1263-1	전	252	252	남해군		
6	"	1264-1	전	178	178	남해군		
7	"	1266-1	전	14	14	남해군		
8	"	1269	전	215	215	남해군		
9	"	1272-1	전	54	54	남해군		
10	"	1276-1	전	345	345	남해군		
11	"	1277-3	전	202	202	남해군		
12	"	1978	도	638	267	국토교통부		
13	"	산265-7	도	153	153	남해군		
14	"	산265-8	도	1,180	1,180	남해군		
15	"	산265-10	도	2,949	2,949	남해군		
16	"	산266-2	도	2,273	2,273	남해군		
17	"	산267-4	도	652	652	남해군		
18	"	산267-6	도	158	158	남해군		
19	"	산269-2	도	379	379	남해군		
20	"	산270-1	도	676	676	남해군		
21	"	산271-2	도	1,641	1,641	남해군		
22	"	산272-1	도	183	183	남해군		
23	"	산272-2	도	52	52	남해군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340호

공시송달(2차 보상협의)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2. 사업의명칭 :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 4. 공고기간 : 2022년 3월 4일 ~ 2022년 3월 18일
-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2. 2. ~ 2022. 3.
 - 장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재난안전과)
(T: 055-860-3293, F: 055-860-3727)
- 6.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우리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 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기재) 1통
 - 통장사본, 인감도장
-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공시송달대상 토지 등의 표시]

[붙임]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남해군)	지번	지목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상주면 상주리	산338-30	임	61.0	미등기01		정*권
	산338-32	임	1,982.0	미등기02		정*권
	산317-3	도	508.0	오*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산326-9	도	833.0	박*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337-5	임	1,535.0	정*문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군 공고 제2022-345호

공시송달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소관: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3호선 남해 동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21수용0723>」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1. 13.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4일

남 해 군 수

- 1. 사업명 : 「국도3호선 남해 동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소관:진주국토관리사무소)
- 3. 공고기간 : 2022. 3. 4. ~ 2022. 3. 18.(14일)
- 4. 재결서 수령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5.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비고
1	김*경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030번안길 **-10	소유자
2	진주원에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로35번길 5	관계인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2-34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김용0	주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00
	소하천명	화룡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설천면 문항리 1398번지(94-1관련)		
	면적	1 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2. 3. 7.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매설		

남해군 공고 제2022-37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심재0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00
	소하천명	중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서면 서상리 1684번지(1474관련)		
	면적	6㎡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2. 3. 10.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매설		

남해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3호

남해군 대체인력뱅크(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남해군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3월 8일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모집예정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시간	담 당 직 무
일반행정	지방한시임기제 8호	3명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 ○ 각종 증명 민원 등 발급업무 ○ 기타 일반행정 관련업무 등
시설(토목)	지방한시임기제 8호	2명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토목업무 전반
사회복지	지방한시임기제 8호	1명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회복지분야 업무 ○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타 사회복지 관련업무 등
환경	지방한시임기제 8호	1명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대기 등 환경 분야 업무 전반

<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남해군 대체인력뱅크’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고 결원 발생 시 그 기간에 대해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신속하게 임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근무기간 : **휴직 등에 따른 결원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임용함 (**임용일~2022.12.31**)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사람은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대체인력뱅크 인력 풀에서 대기(미근무)함
- 선발인원 중에서도 개인별로 임용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업무대행 사유 미발생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자는 휴직 등 결원 발생 시 임용 요청에 지체없이 응해야 하며, 군에서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임용등급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시 임용예정등급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2 법적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라.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3 응시자격

- 가. 공통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행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이전 출생자)
- 다. 주소지 및 성별 : 제한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결격사유>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라. 자격기준

모집분야	세 부 자 격 요 건
일반행정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시설(토목)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토목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환 경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환경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개별 유선 통보)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은 직무수행계획서 PPT 5분 가량 발표 후 면접 실시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3. 21.(월) ~ 2022. 3. 23.(수)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 우편접수 시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사전연락 바람.(055-860-3113)

6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3. 21.(월) ~ 3. 23.(수)	3. 25.(금)	3. 28.(월)	3. 30.(수)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7 보 수

임용등급	기본급	週당 근무시간
지방한시임기제 8호	월 1,652,430원 (1,888,500원 X 35/40)	35시간 기준

※ 기본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적용

8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판매 / 응시원서 수입증지첨부란에 인증기 날인
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 A4용지 2~3매 분량
4. 직무수행 계획서	○ A4용지 5매 이내 분량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기재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필 기재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 (사본 가능)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민간근무 경력(재직)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 함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9.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과 주소변동이력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최종학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
11.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가능
12.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발급한 자료만 유효 (* 최종 합격자에 한함)
13. 기타이력서 기재내용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 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055-860-3113)